

의안 번호	2220	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2. 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19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임미영)

가. 제안이유

-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참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갓집 노인복지관이 2024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노인복지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신규 “종갓집 노인복지관” 명칭과 위치 규정(안 제2조)
 - 명칭: 종갓집 노인복지관
 - 주소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2길 35(약사동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- 관련 규칙 변경(안 제10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동학)

-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종갓집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갓집 노인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.
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-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1. 제40조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